

# '92年度 第2回 追加更正豫算案 審査 報告書

1992. 12. 2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 심사 경과

### 가. 제안 일자 및 제안자

1992년 12월 16일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남구청장 제출

### 나. 회부 일자

○ 각 상임위원회별 : 1992. 12. 21 회부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2. 12. 22 회부

### 다. 상정 일자

○ 각 상임위원회별 - 제18회 남구의회 정기회 제7차 총무, 사회산업,  
도시위원회(92.12.22)

○ 운영위원회 - 제18회 남구의회 정기회 제4차 운영위원회(92.12.22)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18회 남구의회 정기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92.12.23)

## 2. 제안 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기획감사실장 정석조)

### 가. 제안 이유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9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나. 주요 골자

○ 예산 규모 총괄

(단위: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제2회 추경 예산		비 고
			예 산 액	비율(%)	
총 계	64,928	63,448	1,480	2.3	
일반회계	62,014	61,335	679	1.1	
특별회계	2,914	2,113	801	37.9	
특별회계	의료보호	2,407	1,606	801	49.8
특별회계	영세민	303	303		
특별회계	새마을소득	204	204		

○ 일반회계 세입 세출 총괄

- 세입 총괄

(단위: 백만원)

구 分	세 입				비 고
	'92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감	비 율	
총 계	62,014	61,335	679	2.3	
지방세	14,491	15,872	△ 1,381	△8.7	
세외수입	15,222	17,143	△ 1,921	△11.2	
경상적	4,891	4,528	363		
임시적	10,331	12,616	△ 2,285		
조정교부금	15,266	15,266			
보조금	17,035	13,054	3,981	30.5	

- 세출 총괄

(단위: 백만원)

구 분	세 출				비 고
	'92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감	비 율	
계	62,014	61,335	679	2.3	
의회비	635	622	13	2	
일반행정비	15,676	16,401	△ 725	4.4	
사회복지비	13,840	14,003	△ 164	1.2	
산업경제비	1,666	1,622	44	2.7	
지역개발비	27,243	25,701	1,542	6	
문화및체육비	600	616	△ 16	2.6	
민방위비	1,337	1,353	△ 15	1.1	
지원및기타경비	1,017	1,017	120	11.8	

○ 특별회계 세입 세출 총괄

- 세입 총괄

(단위: 백만원)

구 분	세 입				비 고
	'92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감	비 율	
계	2,914	2,113	801	37.9	
세외수입	572	572			
경상적	7	7			
임시적	565	565			
보조금	2,343	1,542	801		
국고	1,871	1,231	641		
시.도비	471	311	160		

## - 세출 총괄

(단위: 백만원)

구 분	세 출				비 고
	'92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감	비 율	
계	2,914	2,113	801	37.9	
인 건 비	240	240			
물 건 비	2,334	1,502	832		
용 자 및 출 자	512	543	31		
반 환 금	49	49			
예 비 비	19	19			

## 4. 검토 및 심사 의견

### ◇ 총괄

#### ○ 세입 분야 예산은,

남구 당초예산 63,448백만원중 금회 추경 1,480백만원으로 92년도 전체 예산은 64,928백만원으로 증가액은 1,480백만원이며 2.3% 증가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 당초예산 61,335백만원중 1.1%인 679백만원이 증가되어 92년 전체 예산은 62,014백만원이고,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2,113백만원중 37.9%인 801백만원이 증가되어 2,914백만원이 증가되었음.

#### ○ 세출분야는 세입 예산 변경 조정과 인건비등 필수 경비 소요액 계상, 국고 및 시비 보조 변경 내시액 정리등 불가피한 경비로 인정됨.

- 그러나 일부 예산은 당초 사업 계획시 충분한 사전 조사 소홀로 전혀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삭감하거나 또는 일부만 집행하고 삭감하는 사항을 심사 과정에서 확인하였으며,
- 그 예를 보면, 환경관리, 경상사업비, 물품구입비중 환경 오염 조사 장비 구입비 26,300천원을 전액 삭감한 사항
- 도로사업, 주요사업비, 시설비중 도로표시판 정비공사비 3천만원중 100만원 만 집행하고 2,900백만원 삭감 사유 확인
- 기타 부분은 사실상 '92년도 예산을 결산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는 것으로서 필수적 경비 증액과, 집행 잔액 정리등을 추경하는 것임.

#### 5. 질의 답변 요지서

- 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별첨
- 나. 각 상임위원회별 질의 답변 요지서 : 별첨

#### 6. 위원 발의 수정안 : 없음

####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

#### 8. 소수 의견 요지 : 없음

####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 답변 요지서

질의자	답변자	질의요지	답변요지
박수용 위원	건설과정 정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용호지역(1~4동) 4개동 도로 축구 시비 공사 9건 5억에 대한 내역은?</li> <li>· 용호2동 지구중 15통~34통 까지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선정되어 있고, 29~3통 주거환경개선 지구에는 포장, 축구 공사 지원을 지난번에는 안된다고 했으나 여기는 주거환경개선 공사를 안하기 위해선지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진행 될지 몰라서 해주는 것인지</li> <li>· 시유지를 29,30통 주민들이 사면 13억원을 요구하여 도로없는 집을 어떻게 짓느냐고 시에 항의한 적이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목 명세서 141페이지중 용호지역 도로및 축구정비 공사 5억 내역을 참고</li> <li>·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행한 것이고 주거환경개선 사업과는 무관함.</li> <li>· 기본계획을 최대한 살리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축구는 해도 좋은데 아스팔트 같은 것은 나중에 파면 예산이 낭비 문제가 고려되고 있음.</li> <li>· 용호지역은 5억만 투자하면 축구, 아스팔트가 100% 가깝게 추진됨.</li> <li>· 그리고 내년에 아스팔트 문제는 고려해 보겠음.</li> </ul>
최홍래 위원	건설과장 정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로표시판 정비공사비 3천만원중 100만원 집행후 2,900만원 삭감 이유와</li> <li>· 환경오염장비 전액 삭감 이유</li> <li>· 철저한 계획이 되지 않아 보다 효과적으로 예산 운영 할 수 없지 않았는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로표시판 규격 개정(91. 6. 10)으로 대대정비 작업을 위해 예산을 확보해 두었다가 시에서 일괄 용역하려다가 구청별로 시행하라는 지시에 의거 부분적 정비만 하고 나머지 삭감하게 되었음.</li> <li>· 앞으로 유연하게 예산을 잡도록 하겠음.</li> <li>· 환경업무가 시로 이관되면서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사용 가치가 있는지 재검토 결과 아직 시기 상조라는 판단이 되어 삭감하게 되었음.</li> </ul>

질의자	답변자	질의요지	답변요지
박남서 위원	사회과장 유용현  가정복지과장 이순영  청소과장 박부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회과 소관 인건비 55,203 천원은 국비·시비 보조로서 가급적 증액하여 보호대상자를 충분히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지.</li> <li>쓰레기 민간위탁수수료는 연초에 연간 단가 계약에 의해 운영되는줄 아는데 2,400만원 증액 이유?</li> <li>보조수당 700만원 삭감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소외 계층에게 지원하지 않고 삭감을 한 이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생활보호대상자중 거대 보호자에게만 예산 지원이 배정</li> <li>연초 생계비 내시액은 정하였다가 당초보다 대상자 감소로 삭감 요청한 것임.</li> <li>장애인이라 해서 아무나 지원을 할 수 없고 등록된 장애인만 지원함.</li> <li>당초 예산을 176,977만원 책정했다가 1차 추경시 18,835만원 삭감했다가 저희들의 착오로 많이 삭감 해서 이면에 부족분을 추경 요구한 것임.</li> </ul>
이계일 위원	기획감사실장 정석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독후감 박표회 개최와 5천의 17백만원에 대한 내역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7백만원 전부가 독후감 발표회 비용이 아니고 국내 여비등 몇가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임.</li> </ul>

## ○ 운영위원회 질의 답변 요지서

질의자	답변자	질의요지	답변요지
박한성 위원	사무국장 이영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복리후생비의 유형 설명</li> <li>· 복리후생비 가수당이라는 것인지</li> <li>· 복리후생비란 식비, 피복비 목욕비등 그 내역을 말씀하는 것인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무원의 봉급규정에는 본봉 각종 수당등이 있음.</li> <li>· 복리후생비 내역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액급식비 : 1인당 월 5만원</li> <li>- 가계보조비 : 6,7급은 9만원씩</li> <li>- 효도휴가비 : 연1회씩 5만원</li> <li>- 연가보상비 : 연 20일중 전체 지급 하는 것이 아니고 연가를 안 간 사람중 15일 이내에 계산해서 보상</li> <li>- 체력단련비 : 본봉의 150% 지급하는 것들이 복리후생비내 포함됨.</li> </ul> </li> </ul>
최진동 위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회소관증 13,343천원이 기구개편으로 인해 전문 위원 3명, 속기사 1명에 대한 급료가 인건비 8,703 천원인데 몇개월분인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월부터 시행되었으며 이때 까지 것을 차감하고 부족액 10-12월 중 부속실 결원 분 1명을 공제하고 부족액 만 요구한 것임.</li> </ul>

## ○ 총무위원회 질의 답변 요지서

질의자	답변자	질의요지	답변요지
박수옹 위원	총무과장 허병태	각목 명세서 43페이지에 복리후생비가 600만원 증액 된 이유는?	· 복리후생비는 직원에게 매달 지급하는 필수적인 경비로써 총무과와 시민과의 직원 증원으로 인한 부족분을 계상한 것임.
박한성 위원	기획감사실장 정석조	사항별 명세서 26페이지 공무원 급여 900만원과 각목 명세서 183페이지, 공무원 급여 1억 5,778만 4,000원이 차감된 이유는?	· 공무원 급여는 직원 정수에 따라 편성되는데 직원 전출입으로 인하여 증가될 수도 있고 감액되는 수도 있음.
임종하 위원	"	예산서 유인비 즉 인쇄비 가 600만원이 증액 편성 되어 있는데 당초 예산 편성시 정확한 판단과 예상을 했었으면 추경에 편성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편성된 이유는?	· 600만원중 200만원은 일반 집중 관리 수용비며 나머지 400만원은 예산서 유인비임. 당초 예산 편성시는 상임 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항별 명세서를 만들 필요가 없었고 올부터 상임위원회가 설치됨으로 인해서 추가로 사항별 명세서를 작성하여 배부함으 로써 유인비 부족분을 증액 편성하게 된 것임.
주만보 위원장	총무과장 허병태	각목 명세서 46페이지의 공무원 교육 및 훈련 기본 경상비 및 경상사업비가 당초 기정예산이 2,152만 8,000원인데 비하여 시지방 공무원 수탁 교육비 증가가 100%이상 증가된 이유는?	· 공무원 교육은 시의 지침에 의하여 실시하는 것으로써 금년의 경우는 당초에 예정 이 없었던 3개월 과정의 간부 공무원 계장 교육이 3명이 있었고 토목직 6급 1명도 3개월 과정의 교육이 있었기 때문임.

질의자	답변자	질의요지	답변요지
이철형 위원	총무과장 허병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목 명세서 49페이지 반상회보 제작의 건인데 월 몇부를 인쇄하는지, 또한 반상회 참석율은 어떠하며 반상회보 배부 방법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상회보는 월 6만9,000부 발간하며 한반에 5매씩 배부하고 있으며 반상회 참석율은 70%에 못미치고 있음.</li> </ul>
임종하 위원	총무과장 허병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정자문위원 수당 84만원 삭감 이유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목 명세서 181페이지에 산출 기초가 나와 있는데 대연4동과 광안3동에 위원 인원이 줄어져서 집행 잔액 분을 감액 편성하게 된 것임</li> </ul>

## ○ 사회산업위원회 질의 답변 요지서

질의자	답변자	질의요지	답변요지
최진동 위원	지역경제과장 정현오	· 노후 어선 대체 사업비 21,600천원에 대한 설명	· 국비지원금이 20%로 21,600 천원이 구청 예산에 편성되어 대체사업비로 되었음.
최진동 위원	지역경제과장 정현오	· 노후어선 3척인 그 배가 어느동네 어느 누구의 배인지.	· 용호1동 오내진 광안2동 박재만 민락동 김둘남
김한민 위원	청소과장 박부일	· 청소대행업체 위탁금에 다시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 요망	· 위탁금 책정 관계는 사전 교수에 의뢰 거리, 산정물량 대당 소요 단가등의 산출 결과에 따라 구청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로 평균 8,622 원으로 결정되었으며 1월부터 3월 12일까지는 91년도 예산으로 집행되고 이후는 심의위서 결정된 금액으로 집행되고 당초예산 17억 6,997만원을 1차 추경 15억 8천만원으로 확정 1차 추경 시 잘못 삽감하였음.
김한민 위원	청소과장 박부일	· 쓰레기 수거량을 어떻게 확인하고 있는지 설명바라며 정확한 통계와 확인 행정 실시바람.	· 석대 쓰레기 매립장 현장에 가서 확인하는 경우도 있고 업체에서 매월 월보도 제출 받고 있으며 차량운행 일보, 전년도 총량등을 감안하여 확인하고 있음.

질의자	답변자	질의요지	답변요지
정경화 위원	청소과장 박 부 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활용품 쓰레기를 가정에서 연락하면 구청차가 실고 오는지.</li> <li>· 재활용품 분리도 쓰레기가 줄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체나 가정에서 모은 것은 구청차가 운반하고 목요일은 대행업체서 수거하고 있음.</li> <li>· 1회용품에서는 쓰레기양이 줄지만 재활용품도 재생공사 까지 운반하기 때문에 실제 양은 줄지 않음.</li> </ul>
정경화 위원	청소과장 박 부 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잔재물 5만원정도 주고 처분하며 이 일이 건설과인지 청소과에서 하는지의 구분 설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정비시의 잔재물은 건설과에서 하고 건설과에서 차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청소차량을 많이 지원해주고 있음.</li> </ul>
박병화 위원	청소과장 박 부 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차량 유지및 에어콘 정책비의 예산 절감으로 감액된 경위</li> <li>· 환경미화원 목욕비 예산 절감으로 감액에 대한 설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초 8대중 시방침에 의거 압착차를 구입토록 되어 있는데 재활용품 수집에 애로가 있기 때문에 시에 보고 5대는 일반 덤프로 결정 구입하므로 그 가격차이임.</li> <li>· 미화원 당초 인원이 212명 이었는데 205-206명으로 6-7명 정도 결원으로 예산이 남았으며 또 미화원이 병원에 입원 한다든지 하면 목욕비를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감액되었음.</li> </ul>

## ○ 도시위원회 질의 답변 요지서

질의자	답변자	질의요지	답변요지
비영일 위원	도시국장 박종대	· 중장기 계획에 의한 사업을 강력히 시행할 용의는.	· 앞으로 내년도부터 최대한 중장기 계획에 의거 실행 토록 최대한 노력
박남서 위원	도시국장 박종대	· 도시국 소관 수입으로 예산 편성 여부	· 도시국 소관으로 세입 지출 을 하는데는 많이 모자라며 전출, 전입금은 없음. · 세출은 인건비 부족 보충 공사 금액의 제조정등을 예산 편성
	토지관리과장 이재우	· 개발부담 위임 수수료 삭감에 대해	· 개발부담금 위임수수료 삭감 은 예측치 못한 사안 발생 으로 예를들면 사업자가 준공을 할려다가 못한 것이 있고 소송 진행중에 있는 것등이 발생한 세입 차질에 의한 삭감임.
이계일 위원	건설과장 정진화	· 경상사업비, 정보비, 항만 청 수탁 보상 및 건설사업 보상 추진비에 대해	· 구예산이 아니며 항만청에서 들어오고 나가는 돈으로서 예를들면 청도복선화등에 사용되고 있음.
	도시국장 박종대	· 개발부담금 완료 시점 지가 수수료가 감소된 이유	· 세입이 감소되니까 자연적 으로 감소된 것으로 쓰고 남은 돈 삭감한 것임.
박명수 위원	도시국장 박종대	· 개발비, 투자사업비가 삭감 되고 증가된 사유 설명	· 개발부담금, 세계 잉여금등 세입 결함으로 인한 사업비 의 삭감 초례

질의자	답변자	질의요지	답변요지
김봉곤 위원	건설과장 정진화	· 대연5동 동광판지에서 못골시장 진입로 토지매입 비등 삭감에 대해	· 세입 결함으로 중요사업비 중에 따라 삭감되었으며 증장기 계획이 아직 고정이 안되어 내년부터는 원만한 증장기 계획을 수립하는데 최대한 노력
이기광 위원	도시정비과장 이용웅	· 유엔묘지 부근 불법광고물 정비 대집행에 대해	· 집행 전문업체에서 대행 집행